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개정안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구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
기술사	가스,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형, 기계, 기계안전,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소음진동, 용접,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응용, 철도, 철도신호, 철도차량, 품질관리, 정보통신, 차량기술사, 대기관리
기능장	가스, 건설기계정비, 금속재료, 금형제작, 기계가공,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자동차 정비, 전기, 전자기기, 철도차량정비, 통신설비, 판금제관
기사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재료, 기계설계, 누설비파괴검사,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안전, 설비보전, 소음진동, 에너지 관리, 와전류비파괴검사, 용접, 일반기계,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대기환경, 품질경영
산업기사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재료,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대기환경, 무선설비, 방사선비파괴검사, 배관, 산업안전, 소음진동, 에너지 관리, 용접,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자, 정밀측정, 철도신호, 철도차량,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치공구설계, 침투비파괴검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품질경영
기능사	가스, 건설기계정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기중기운전, 동력기계정비, 무선설비, 방사선비파괴검사, 배관, 설비보전, 에너지 관리, 연삭, 열처리, 용접,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전기,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기기, 정밀측정,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철도전기신호, 철도차량정비,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비고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통합 또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참고 1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비고 : 상기 국가기술자격종의 종목 중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통합 또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p>	<p>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p> <p>&lt;삭 제&gt;</p>
<p>&lt;신 설&gt;</p>	<p>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부 칙&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통합 또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p>